

동 지침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0.2.3 既 시행) 및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6판)」(20.2.20 시행)을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2판)

2020. 2. 21



보건복지부

목 차

I. 목적 및 기본방향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2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2
3.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	3
4.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4
5. 시설 휴관(원) 시 조치사항	5
6. 행정사항	5
III. 지자체 협조사항	5
▷ 불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6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7
3.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9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11
5.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2
6.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요약)	13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14
8.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임상기록지)	15
< 참고 >	
1. 사회복지시설 종류	16

1. 목 적

-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 요양기관 포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사회복지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이용자, 종사자, 기타 방문객 등 증상자의 신고 접수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 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시설 내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입국 후 14일) 한시적 업무 배제(유급휴가 처리)
- ☐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배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
-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시설 이용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
 -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의심환자 독립된 공간(1인 1실)에 격리,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지,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붙임 6)
 -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 체온이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 ☞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 시설 입소·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및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입소·출입하도록 안내
 - 시설 내/외부 소독, 공기정화 및 방역 등 주기적 관리 철저
-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4.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자제 요청 등
 - 가족 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하여 면회·외박·외출 자제요청
 - 불가피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실시 후 이동 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 복귀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밀접접촉 여부, 지역사회 동선 확인 필요
-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 최근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있는 경우 시설을 이용(방문)하지 않도록 안내
 - 외부인 방문 제한(방문시간 지정, 예외적 방문 허용사유(가족 한정 등) 특정), 방문자 리스크 관리, 이용자/방문자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의무화(책임자 지정)

□ 행사 또는 교육

-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
 - 불가피하게 행사 및 집합교육 진행 시 최근 2주내 중국 입국자, 유사 증상자, 접촉자 등은 참석을 배제하고,
 - 행사장 및 교육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참여 인원 에 따라 발열 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등 조치 선행

5. 시설 휴관(원) 시 추가 조치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유지 방안 마련·운영

- * 아동(도시락, 식사지원 등), 노인(안부전화, 도시락 등), 장애인(활동지원) 등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지침’ 활용

6.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20.1.30. 시달)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20.1.29. 공문시행)

Ⅲ 지자체 협조사항

- (현장지원)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 지원 확대 필요
- (연락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설휴관)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 **일반국민 행동수칙**

- 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⑤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⑥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 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②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
- ③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 ④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 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⑥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필수 위생수칙 4가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에 방문한 경우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방문 또는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국민 여러분!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용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선별진료소 갈 땐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타인과의 접촉 삼가**



의료진 여러분!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ITS 활용 등)



**진찰 시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보건소로 신고**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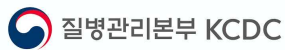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소독제 설명서에 따른 사항 준수)

-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청소/소독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
 - *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소독 방법 금지
-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
 -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
-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 직물,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
-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
-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
-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 를 소독하고, 천(타올)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소독 장비는 폐기
 - *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
-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월)

□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신고 대상 >

1.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2.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4.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5.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6.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자표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자자체용, 제6판)

붙임 8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예시 000	체온	오전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체온	오후 38°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호흡기 증상														
	① 기침	✓	✓	✓				✓			✓				
	② 인후통				✓	✓							✓	✓	✓
	③ 호흡곤 란	✓	✓	✓											
	④ 객담	✓					✓					✓			
	⑤ 기타		설사												
	체온	오전													
	체온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 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참고 1

사회복지시설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기관 포함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 정신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치료시설 - 쭈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센터 - 청소년치료재활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